

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가본서 420~426

1 정보공개청구권**

- 1) 의의 :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 2) 종류
 - ①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
예) 청문 당사자의 문서 열람·복사청구권
 - ②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이해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국민 일반에게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

2 정보공개법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 1) 알 권리*** 의의 :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 인정 여부
 - 헌법상 명문 규정 X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 2) 법적 성질
 - 자유권적 성질 : 정보를 수집·처리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
 - 청구권적 성질 :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결론 헌법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 1) 법적 지위 :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특별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름

판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2013두20882)*

- 2) 적용 제외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 → 정보공개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름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법률유보 원칙 적용 여부

- 수익적 내용의 조례 : 법률유보 적용 X ∴ 법률 근거 X → 수익적 조례 → 적법
- 침익적 내용의 조례 : 법률유보 적용 O ∴ 법률 근거 X → 침익적 조례 → 위법

판례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92추17)*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후 : 지방의회가 정보공개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입법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3 정보공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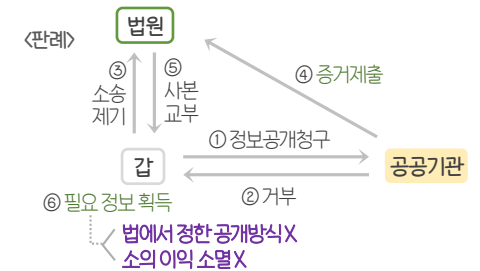
(1) 정보의 의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2) 공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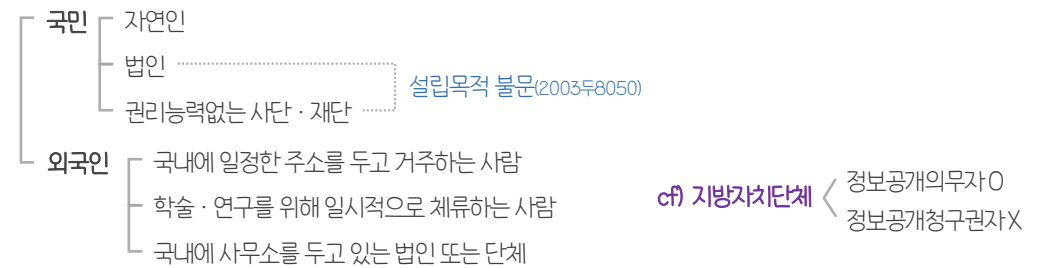
-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
-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2002두6583)**



4 정보공개청구권자★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 < 정보공개 의무자 O
정보공개 청구권자 X

5 정보공개 의무자

- (1) 의의 : 정보공개 의무자는 공공기관이다.

(2) 공공기관의 종류*

- 국가기관 :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의 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

- 1) 학교 : 국·공립학교 O, 사립학교

판례1 ① 시행령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②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2004두2783)***

판례2 학교에 대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2011두5049)*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① **판단기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008두13101)*

② **관련 판례****

한국증권업협회(2008두5643)	→ 공공기관 X → 정보공개 의무 X
한국방송공사(2008두13101)	→ 공공기관 O → 정보공개 의무 O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독행집 쟁점90~91 문제 전부, 독행기 Part3 67~68번(추가기출 포함)을 푸세요



056 정보공개제도(2) - 정보공개 절차 등

기본서 437~441, 445~449

1 정보공개 절차

(1) 정보공개 청구 : 청구서 제출 or 말

판례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2007두2555)**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1)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cf) **비공개결정 간주 규정 삭제**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2013년 개정시 삭제

2)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제3자에 대한 통지	: 필수 절차
제3자의 의견청취	: 임의 절차

3)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 X(2017두44558)**
∴ 정보공개제도 운용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지 권리구제에 국한 X

4)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 가능(=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가 아닌 경우 이후 처리절차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음)**

(3) 반복청구 등의 처리

1) 정보공개 의무 부당한 반복 청구 : 종결처리 가능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 정보 소재 안내 후 종결처리 가능*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결정 :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

2) 비공개결정 :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을 적시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

판례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2012두17384)*

(5) 정보공개 방법

1)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2) 정보공개로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본·복제물 공개 가능

3)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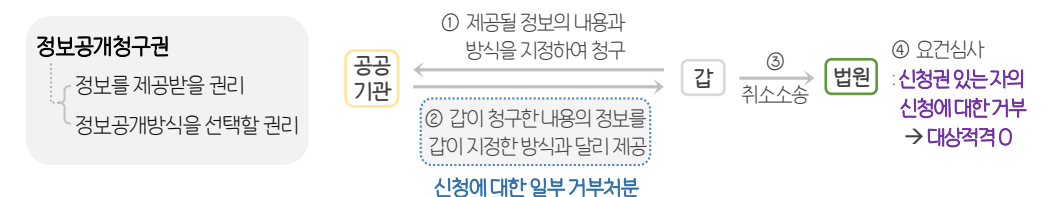
판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등의 정보는 공개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2015두46512)*

4)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각종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해야 함

5)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선택권 :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있음*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 X
(2003두8050)*

cf)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 인정 여부(2016두44674)****



(6) 비용부담**** 원칙 :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감면 <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에 필요한 경우 : 감면사유 O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 : 감면사유 X

2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정보공개 여부 심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 < 원칙 : 위원 중 2/3
안보·통일·외교 및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 : 위원 중 1/3 이상*

3 정보공개위원회*

- 기능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조정
- 조직 : 국무총리 소속
- 구성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4 기타*

- 1) 제도 총괄 :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등에 관한 기획 · 총괄 업무 관장 → 행정안전부장관
- 2)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 권고 가능*
- 3) 국회에의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 4)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무 :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독행집 쟁점93 1~16번, 독행기 Part3 69~71번(추가기출 포함)을 푸세요



2)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대상적격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신청권을 인정

→ 정보공개 신청 후 거부당하면 신청권 있는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 → 처분성 0 → 대상적격 0

② 원고적격 :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법률상 이익

→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할 필요없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인정(2003두8050)**

3) 피고적격 :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

4) 소의 이익 ****

cf 소의 이익 :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

-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2008두13101) : 인정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정보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2002두6583) : 인정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2003두9459) : 부정
- 정보공개거부처분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된 경우(2000두7087) : 부정

5) 입증책임(2003두12707)★

- 공개할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 : 공개청구자
-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 공공기관

6) 일부취소판결 가능 여부(2003두12707)★

- 요건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일부취소판결을 위해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 cf 청구취지 : 재판을 통해 원고가 구하는 내용으로, 소장 내용 중 '~라는 판결을 구한다.'라고 기재된 부분

2 제3자의 비공개요청

(1) 의의 및 요청기간*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효과 : 공공기관은 제3자의 요청에 구속 X*

판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8두8680)

독행집 쟁점94 1~10번, 독행기 Part3 72~78번(추가기출 포함)을 푸세요



057 정보공개제도(3) - 불복 구제 절차

기본서 441~445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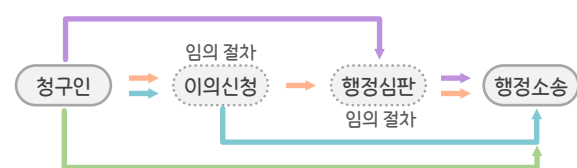
(1) 이의신청

- 대상 : 비공개결정, 부분공개결정,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
- 성질 : 임의적 절차
- 기간 : 비공개결정 · 부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신청*

(2) 행정심판

- 청구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
- 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or 의무이행심판*
- 성질 : 임의적 절차★★

☐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3) 행정소송

- 1) 행정소송의 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